

공소장 종합 분석 보고서

Indictment Analysis Report

사기 혐의 공소장에 대한
공소사실 · 구성요건 · 양형 구조 분석

의뢰인 피고인 박동혁 불구속 · 변호인 선임 예정

분석범위 공소사실 · 구성요건 · 양형 3개 영역

검토·작성 인사이드 분석팀

작성일 2026년 8월 10일

CONFIDENTIAL

본 보고서는 위 의뢰인의 내부 검토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Insight Academy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인용·복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분석은 설명 자료로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제공된 자료에 근거합니다.



01 한눈에 보는 요약

「무엇이 문제인가」 — 이 장은 사건의 전체 열개를 한 면 안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읽어 주십시오

본 보고서는 변호(변론)가 아닌 분석·설명 서비스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검사의 「주장」 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헌법 제 27 조 제 4 항, 형사소송법 제 275 조의 2). 본 보고서의 범위·평가·전략은 담당 변호인의 최종 검토를 거쳐야 하고,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기소되었나

검사는, 피고인이 2025. 9.경 이미 공사대금 채무가 약 1 억 2,000 만 원에 이르고 기존 현장 3 곳의 공사가 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되어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5. 10. 6.경 피해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자재를 선발주하여 12 월 중순까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 자재를 직영 창고에 보유하고 있어 공기 지연이 없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 만 원과 중도금 3,500 만 원 합계 5,0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공소장]

죄명은 사기 1 개이고, 적용법조는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하나입니다. 공범·별지 범죄일람표·다른 죄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구속 여부는 「불구속」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절차 형태는 공소장 제목과 수신처(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청구 취지가 없는 점에 비추어 「정식 공판청구」 로 판단됩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법정형의 범위

행위 시점(2025. 10.)에 시행되던 형법 제 347 조 제 1 항의 법정형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어느 형을 선택할 것인지는 법원이 정하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경합범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처단형의 폭은 법정형과 같습니다. [법령·판례]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법정형」 과 「선고형」 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그 죄에 대해 미리 정해 둔 형의 폭이고, 처단형은 가중·감경을 반영해 좁혀 놓은 범위이며, 권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구간이고, 선고형은 판사가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하는 형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10 년이라고 하여 그 상한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이 아니며, 본 보고서는 구체적 선고형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핵심 쟁점 3 가지

1. [제 1 부 · 공소사실] 검사가 특정한 기망 문언 두 가지(「직영 창고 보유」와 「12 월 중순 완성 약속」) 가운데 어느 것이 증거로 뒷받침되는가, 그리고 중도금 수령 부분의 일시·장소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가. **【분석의견】**
2. [제 2 부 · 구성요건] 사기죄의 핵심인 「계약 당시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가, 아니면 계약 후 자재가 급등·기존 현장 문제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가. **【분석의견】**
3. [제 3 부 · 양형] 이득액 5,000 만 원이 양형기준상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처벌불원이 권고영역을 어떻게 바꾸는가. **【분석의견】**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26. 1. 15.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사건은 수사 단계를 지나 재판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소장 부분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절차(인부)가 진행됩니다. 그 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피고인과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제 3 부 절차 로드맵에 정리하였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02 제 1 부 · 공소사실 및 혐의

「검사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 아래 내용은 공소장에 적힌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정리한 것으로,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1. 사건 개요

표 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2026 년 형제 99999 호 (검찰 사건번호) / 법원 사건번호 기재 없음
관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소장 수신처)
절차 형태	정식 공판청구 — 약식명령 청구 취지·검사 벌금 의견액·가납명령 청구 기재 없음
피고인	박동혁 (가명, 45 세) / 직업 인테리어 시공업 / 불구속
변호인	「(기재 생략)」 — 공소장 원문이 가린 항목 (미선임 여부는 확인 불가)
죄명	사기 (1 개)
적용법조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공소제기일	2026. 1. 15.
검사	이정우 (가명)
피해자	김선영 (가명, 38 세)
편취액	합계 5,000 만 원 (계약금 1,500 만 원 + 중도금 3,500 만 원)
죄수 구조	단순일죄 — 단일한 기망행위에 기한 2 회 교부. 경합범·상상적 경합·포괄일죄 가중 없음
별지	범죄일람표 없음 (단일 피해자 사건)

공소장은 죄명·적용법조·공소사실·피고인 특정사항을 모두 갖추고 있고, 죄명이 하나이며 별지에 의존하지 않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 점은 사건의 쟁점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지 않고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 라는 한 점으로 모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공소장 III.항에는 피고인이 300 만 원을 반환하고 철거 공사 일부를 진행한 사실과 피고인의 변소 취지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 증거로 현출될 사항을 공소장 단계에서 미리 밝힌 것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 관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재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1-2. 공소사실 시간순 정리

표 2. 행위별 시간순 정리 — 일시 · 장소 · 주체 · 객체 · 실행행위 · 결과 · 피해

번호 / 일시	장소	주체 → 객체	실행행위	결과 · 피해
① 2025. 9.경	서울 강남구 (업체 소재지)	피고인 → (해당 없음)	공사대금 채무 약 1 억 2,000 만 원 부담, 기존 현장 3 곳이 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중단됨	기망행위의 전제가 되는 배경 사정 (그 자체는 범죄행위 아님)
② 2025. 10.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소재 피해자 아파트	피고인 → 피해자 김선영	「계약금·중도금을 주면 자재를 선발주하여 12 월 중순까지 전체 공사를 완성하겠다」, 「자재를 직영 창고에 보유하고 있어 공기 지연이 없다」 라고 고지	피해자의 착오 유발 → 같은 날 계약금 1,500 만 원 송금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③ 2025. 10. 20.경	기재 없음 (계좌 송금)	피고인 → 피해자 김선영	② 의 기망 상태가 유지된 채 중도금 수령	중도금 3,500 만 원 송금 — 편취액 합계 5,000 만 원
④ 2025. 11.경	기재 없음	피고인 → 피해자 김선영	300 만 원 반환	피해액 일부 회복 (공소장 III. 참고사항)
⑤ 2025. 12.경	피해자 아파트 (공사 현장)	피고인 → 공사 목적물	철거 공사 일부 진행 (공정률 약 15%)	일부 이행 — 이행 의사 유무 판단의 자료 (공소장 III. 참고사항)
⑥ 2026. 1. 15.	서울중앙지방법 검찰청	검사 이정우 → 서울중앙지방법 법원	공소제기	재판 절차 개시

시간순으로 보면 이 사건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검사는 ①의 재정 상태를 「계약 당시 이미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결론의 근거로 앞에 배치하고, ②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특정한 뒤, ③의 계좌 송금으로 재물 교부라는 결과를 확정하는 순서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였습니다. 반대로 ④와 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계약 이후에도 일부 이행과 일부 반환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즉 검사의 논리는 「②의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방어의 출발점 역시 같은 시점에 이행 의사가 존재했는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1-3. 공소사실 특정 진단

※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3. 특정 진단표 — 충족 ● / 일부 ① / 미충족 ○

특정 항목	공소장 기재 내용	충족 여부	흡결 · 다룰 여지
일시	기망행위 2025. 10. 6.경 / 계약금 같은 날 / 중도금 2025. 10. 20.경	● 충족	「경」이라는 표현은 실무상 허용되는 범위이며 특정 흡결로 보기 어려움
장소	기망행위 장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로 소재 피해자 아파트로 특정. 중도금 수령 관련 장소는 기재 없음	① 일부	중도금 부분의 기망행위 반복 여부·수령 경위가 기재되지 않아 석명이 필요할 수 있음
행위 태양	「직영 참고 보유」 및 「12 월 중순 완성」 두 개의 고지 내용을 문언으로 특정	● 충족	기망 문언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그 문언대로 발언했는지가 증거로 다투어지는 구조
피해 내용	계약금 1,500 만 원 + 중도금 3,500 만 원 = 5,000 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계좌번호는 원문 생략)	● 충족	편취액에서 반환금 300 만 원·기성 부분을 공제할 것인지가 별도 쟁점 (제 2 부에서 검토)

종합하면 이 공소장은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관문은 대체로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일·장소·방법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기망 문언까지 직접 인용되어 있어, 특정 흡결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주장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중도금 부분은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최초 기망의 효과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지가 기재상 분명하지 않으므로, 재판부의 석명 대상이 되거나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논점은 무죄를 다투는 무기라기보다, 검사의 주장 범위를 명확히 고정시켜 방어 대상을 좁히는 실무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1-4. 예상 증거 구조

※ 증거목록이 「기재 생략」 되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공소사실의 문언으로부터 역산한 예측입니다.

표 4. 예상 증거 분류와 다룰 수 있는 지점

구분	예상 증거	입증 대상 사실	증거능력 · 신빙성 쟁점 후보
인적증거 (직접)	피해자 김선영의 진술 (진술조서 · 법정 증언)	「직영 참고 보유」 발언의 존재, 완성 약속의 내용, 착오와 송금의 경위	발언 문언의 재현 정확성, 수사 초기 진술과 법정 진술의 일관성, 피해 감정에 따른 기억의 재구성 가능성
인적증거 (정황)	기존 현장 3 곳의 발주자·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진술	2025. 9.경 자재대금 미지급과 공사 중단 사실	각 현장의 중단 원인이 자금 사정인지 다른 사유인지의 구분
서증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약정 공기(12 월 중순)와 대금 지급 조건	계약서에 「직영 참고」 문언이 없다면 그 부분은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게 됨

구분	예상 증거	입증 대상 사실	증거능력 · 신빙성 쟁점 후보
서증 (디지털)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통화 녹음	기망 문언의 실재 여부, 계약 전후의 설명 내용	대화의 성립 진정, 발체 인용에 따른 맥락 왜곡, 녹음의 편집 여부
물적·금융 자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5,000 만 원 수령 사실과 수령금의 사용처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은 증거 — 다만 사용처의 「평가」 는 다룰 수 있음
물적 자료	창고 임대차계약·자재 발주서·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직영 창고 보유 여부, 자재 선발주 실행 여부, 공정률 15%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 — 확보 여부가 방어에 관건

증거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검사가 특정한 두 개의 기망 문언이 성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영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은 참·거짓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어서 임대차계약서나 현장 확인만으로 판가름이 나므로 검찰의 입증 난이도가 낮습니다. 반면 「12 월 중순까지 완성해 주겠다」 는 것은 장래의 약속이므로 그 자체로는 거짓말이 아니고, 약속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기망이 됩니다. 따라서 방어의 초점은 후자에 두되, 전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석의견】**

쉬운 설명 — 제 1 부 정리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는 「공사를 끝낼 형편이 아니면서도 끝내 주겠다고 속여 5,000 만 원을 받아 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欺罔)'이란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믿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고, '편취(騙取)'란 그렇게 속여서 재물을 받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2025 년 9 월의 빛 이야기를 앞에 꺼낸 이유는, 계약을 맺던 10 월 6 일 그 시점에 이미 공사를 끝낼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300 만 원을 돌려주고 철거 공사를 15% 진행한 사실은 '끝낼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어, 뒤의 제 2 부에서 다툼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공소사실의 특정(特定)'이란 검사가 언제·어디서·어떻게라는 세 가지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는 규칙인데, 대법원이 아닌 법률 자체가 정한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밝혀 사실을 특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 공소장은 그 요건을 대체로 갖추었으므로, '적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끝내 달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대는 절차가 아니라 내용, 즉 '계약할 때 정말 속일 마음이었는가'로 옮겨 가며, 그 이야기를 이어서 제 2 부에서 다룹니다.

03 제 2 부 · 범죄의 구성요건

「법적으로 성립하는가」 —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기죄의 각 요건이 채워지는지를 요소별로 점검합니다.

2-1. 사기죄 구성요건 6 요소 분해 및 매핑

표 5. 구성요건 6 요소와 공소사실의 대응

구성요건 요소	내용	대응하는 공소사실 문장	대응 여부
① 보호법익	개인의 재산권 —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막고 거래상의 신의를 보호	피해자가 송금한 5,000 만 원	대응 명확
② 행위주체	제한 없음 (신분범 아님)	인테리어 시공업체 「디자인모던인테리어」를 운영하는 피고인	대응 명확
③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계약금 1,500 만 원·중도금 3,500 만 원 (재물인 금전)	대응 명확 —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취득형
④ 실행행위	기망 —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	㉔ 「자재를 직영 창고에 보유하고 있어 공기 지연이 없다」 ㉕ 「계약금·중도금을 주면 자재를 선발주하여 12 월 중순까지 완성하겠다」	㉔는 현재 사실에 관한 고지, ㉕는 장래 약속 — 성질이 달라 평가를 분리해야 함
⑤ 결과·인과관계	기망 → 착오 → 처분행위(교부) → 재물 취득의 연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계좌로 송금받았다」	송금 사실은 계좌내역으로 확정 가능. 다만 「무엇에 속아」 송금했는지의 연결이 쟁점
⑥ 주관적 요건	고의(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약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 다」	이 사건 최대 쟁점. 내심의 사정이므로 간접사실의 종합으로 판단됨

사기죄는 겉보기에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다섯 개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며, 그 착오 때문에 스스로 재산을 넘기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재물이 이전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행위자가 처음부터 인식하고 의욕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②·③·⑤의 객관적 부분은 계좌 거래내역이라는 다툼 없는 증거로 채워지므로 사실상 확정 영역에 가깝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곳은 ④의 성질 판단과 ⑥의 시점 판단입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 도 3775 판결

거래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참조조문 형법 제 347 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도 5382, 2005 도 7481, 2007 도 10416)

위 판결은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를 다룬 것으로, 이 사건에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현장의 미지급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검사의 주장과 구조가 맞닿아 있습니다. 즉 자금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가 편취 범의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하여, 사업 자체가 허황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2-2. 요소별 입증 난이도와 다룰 수 있는 지점**표 6. 검찰의 예상 입증 방법과 난이도 (상 · 중 · 하)**

요소	검찰의 예상 입증 방법	난이도	방어 측이 다룰 수 있는 지점
④-㉔ 참고 보유 고지	참고 임대차 관계 부존재 확인, 피해자 진술	하	그 문언을 실제로 말했는지 자체를 다투는 방식 — 계약서·대화기록에 없다면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됨
④-㉔ 완성 약속	약정 공기와 실제 진행 상황의 대비	중	장래의 약속은 그 자체로 기망이 아니며, 이행 실패만으로 거짓말이 되지 않음
⑤ 착오와 인과관계	피해자 진술 (「참고가 있다고 해서 믿었다」)	중	송금의 실제 동기가 견적가·디자인·지인 소개 등 다른 요인이었을 가능성
⑥ 이행 능력 부존재	2025. 9.경 채무 1억 2,000 만 원, 현장 3 곳 중단 자료	중	인테리어업은 선수금으로 자재를 조달하는 구조여서 부채 존재가 곧 이행 불능은 아님
⑥ 이행 의사 부존재	수령금의 사용처 추적, 현장 진행 실적	상	철거 공사 15% 착수, 300 만 원 반환은 이행 의사의 징표로 평가될 수 있음
⑥ 불법영득의사	자금의 용도 전용	상	현장 간 자금 혼용은 업계의 통상적 자금 운용일 수 있어 곧바로 영득의사로 등치되지 않음

표에서 보듯 검찰의 입증 부담은 뒤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계좌로 5,000 만 원이 들어온 사실은 다룰 수 없지만, 그 돈을 받을 때 피고인의 머릿속이 어떠했는지는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간접사실의 종합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간접사실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수령한 5,000 만 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가. 둘째, 이 현장을 위한 자재 발주나 인력 투입이 실제로 있었는가. 셋째, 계약 당시 남은 공기 안에 시공을 마칠 객관적 가능성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방어의 실질적 내용이 되며, 이는 제 3 부의 준비자료 표와 직접 연결됩니다. **【분석의견】**

2-3. 적용법조 · 법정형 · 죄수 검토

가. 행위시법 원칙 — 이 사건의 숨은 변수

표 7. 형법 제 347 조 제 1 항의 행위시 조문과 현행 조문 대조

구분	법정형	적용 여부
행위시 조문 (행위일 2025. 10. 6. 당시 시행)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형법 제 1 조 제 1 항 (행위시법 원칙)
현행 조문 (시행 2026. 3. 12.)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적용 — 형이 무거워진 개정이므로 소급하지 않음
판단 근거	형법 제 1 조 제 2 항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이 사건은 형이 무거워진 경우이므로 제 1 조 제 1 항으로 회귀
결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 처단형·양형 분석은 모두 이 전제 위에서 산출

공소제기 이후 형법 제 347 조가 개정되어 2026. 3. 12.부터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2025. 10.에 있었고, 형법 제 1 조 제 1 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같은 조 제 2 항은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한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더라도 이 사건에는 구법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점은 언론 등을 통해 개정 소식을 접한 의뢰인과 가족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나. 죄수 관계

공소사실은 하나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이 2 회에 걸쳐 교부된 구조이고, 검사도 이를 나누지 않고 「합계 5,000 만 원」의 단일 공소사실로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1 명이고 기망의 동기와 방법이 하나이므로 단순일죄로 평가되며,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 법조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 38 조의 경합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고, 처단형의 폭은 법정형의 폭과 같아집니다. 다른 죄수 구성의 가능성으로는 중도금 수령 시점에 새로운 기망이 있었다고 보아 2 죄로 구성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으나, 공소장에 그러한 기재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공소장】 【법령·판례】 【분석의견】

다. 편취액 산정 문제

피고인이 300 만 원을 반환하고 약 15%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므로 편취액이 그만큼 줄어드는지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기준으로 하고, 사후에 일부를 반환하거나 일부 이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편취액 자체를 감축시키지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양형기준상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감경인자와 직결됩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 법리 적용은 담당 변호인의 확인을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2-4. 절차적 적법성 점검

표 8. 공소기각 · 면소 사유 점검표

점검 항목	판단 기준	이 사건 검토	결과
공소장 기재사항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3 항 — 피고인 특정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네 가지 모두 기재되어 있음	흡결 없음
공소사실 특정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4 항 — 시일·장소·방법의 명시	표 3 참조. 중도금 부분만 ① 일부	공소기각 사유로는 부족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 249 조 제 1 항 제 3 호 — 장기 10 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 년	행위일 2025. 10. 6. 기산, 공소제기 2026. 1. 15. — 약 3 개월 경과	도과 없음
친고죄 여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지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님 (친족상도례 적용 관계는 공소장상 확인되지 않음)	해당 없음
반의사불벌죄 여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지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음	해당 없음 (양형 요소로만 작용)
공소기각 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 327 조 각 호	확인되는 사유 없음	해당 없음
공소기각 결정 사유	형사소송법 제 328 조 각 호	확인되는 사유 없음	해당 없음
면소 사유	형사소송법 제 326 조 각 호 — 확정판결·사면·시효완성·법령개폐	확정판결·사면 관련 기재 없음. 개정은 형의 상향이므로 면소와 무관	해당 없음
공소장일본주의	법원에 예단을 줄 자료를 공소장에 첨부·인용하지 않을 것	Ⅲ. 참고사항에 반환·일부 시공·피고인 변호사가 기재됨	검토 여지 있음 (다만 내용은 피고인에게 유리)
수사 적법성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고지, 위법수집증거 여부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판단 불가	기록 열람 후 확인할 과제

절차적 관문은 대체로 통과되어 있어, 절차만으로 재판을 끝내는 노선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소시효는 행위일로부터 3 개월 만에 공소가 제기되어 논의의 여지가 없고, 사기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은 「합의만 하면 사건이 없어진다」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지점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적법성은 공소장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여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조서 작성 절차, 압수·수색의 근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2-5. 종합 — 삼면검토와 대응 방향

가. 검사의 시각 — 왜 이런 구조로 썼는가

1. 기망 문언을 「직영 창고 보유」라는 검증 가능한 현재 사실로 특정하였습니다. 내심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임대차 자료 하나로 거짓말을 확정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확보한 것입니다. 【분석의견】
2. 2025. 9.경의 채무액과 현장 3 곳 중단 사실을 공소사실 서두에 배치하여, 계약 시점 이전에 이미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시간적 순서를 고정하였습니다. 【분석의견】
3. 「받은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문장으로 자금의 용도 전용을 편취 범의의 핵심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계좌 추적으로 뒷받침하기 쉬운 논증 경로입니다. 【분석의견】
4. 송금이라는 다툼 없는 처분행위로 결과와 인과관계를 고정하여, 사건의 쟁점을 주관적 요건 하나로 좁혔습니다. 【분석의견】
5. 300 만 원 반환과 15% 시공 사실을 참고사항에 미리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근거로 제기할 방어논리를 먼저 드러내고 그것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인상을 남기려는 구성으로 읽힙니다. 【분석의견】

나. 변호인의 시각 — 다룰 수 있는 지점

1. 「직영 창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발언의 존부입니다. 계약서·견적서·대화기록에 그 문언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분석의견】
2.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입니다. 12 월경 철거 공사에 실제로 착수하여 약 15%의 공정을 진행한 사실은 「처음부터 공사할 마음이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객관적 사정입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3. 이행 능력의 평가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은 선수금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현장별로 자금을 회전시키는 구조여서, 채무의 존재만으로 능력 부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분석의견】
4. 자금 용도의 평가입니다. 기존 현장의 자재대금을 갚는 것이 곧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사업 계속을 위한 지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다룰 수 있습니다. 【분석의견】
5.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입니다. 자재 가격 급등과 기존 현장 문제로 인한 이행 지연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6. 중도금 부분의 특징입니다. 중도금 수령 시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주장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견】**
7. 절차적으로는 공소장 참고사항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하여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실익을 따져 선택할 사항입니다. **【분석의견】**

다. 법원의 시각 — 재판부가 주목할 프레임

- 판단의 기준 시점을 계약 체결일인 2025. 10. 6.으로 고정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과 그 이전부터 존재한 사정을 엄격히 분리하여 볼 것입니다. **【분석의견】**
- 두 개의 기망 문언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참고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완성 약속 부분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분석의견】**
-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한계를 설정하는 일반 법리에 따라, 사업의 실질과 이행 노력의 존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 수령한 5,000 만 원의 사용처를 계좌 흐름으로 확인하려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사실상 심증 형성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분석의견】**
- 예상되는 석명사항으로는 기존 현장 3 곳의 구체적 내역, 이 사건 현장을 위한 자재 발주 실적, 중도금 수령 시의 설명 내용,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분석의견】**

라. 대응 방향 3-시나리오

표 9. 대응 방향별 요지 · 성립 조건 · 상의할 사항

시나리오	요지	성립 조건	변호인과 상의할 사항
A — 절차적 쟁점 중심	공소사실 특정 흠결· 공소장일본주의 등 절차 사유로 다투는 노선	특정 흠결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이 사건은 절차적 흠결이 뚜렷하지 않아 단독 노선으로는 실익이 낮음. 중도금 부분 석명 요구 정도로 활용할지 여부
B — 본안 다툼 중심	계약 당시 편취 범의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성요건 미충족을 다투는 노선	자재 발주 자료·현장 진행 자료·자금 사용처 소명이 확보되어야 함	확보 가능한 자료의 실제 범위, 피해자와의 대화기록 존부, 무죄를 다툼 경우 양형상 불이익 가능성
C — 현실적 노선	일부는 다투되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정비에 중점을 두는 노선	잔여 피해액의 회복 자원 마련과 피해자와의 협의 가능성	다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회복 시기와 방법,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

세 가지 노선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B 와 C 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툼의 범위를 넓게 잡을수록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어려워지고, 반대로 회복에만 집중하면 다툼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긴장 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느 노선을 택할 것인지는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피해자 측의 태도를 확인한 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며, 본 보고서는 특정 노선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석의견】**

마. 다룰 수 있는 것과 인정이 불가피한 것

표 10. 쟁점의 구분

구분	항목	근거
인정이 불가피한 것	2025. 10. 6.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사실	계약 경위 자체는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인정이 불가피한 것	합계 5,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
인정이 불가피한 것	2025. 9.경 상당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	채권자·자재상 자료로 확인 가능
인정이 불가피한 것	약정한 12 월 중순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	공정률 약 15%로 공소장에 기재
다룰 수 있는 것	「직영 창고 보유」 발언의 존부와 문언	계약서·대화기록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짐
다룰 수 있는 것	계약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	자재 발주·현장 착수 실적으로 반증 가능
다룰 수 있는 것	수령금 사용의 성격 (사업 계속 vs 편취금 소비)	계좌 흐름의 평가 문제
다룰 수 있는 것	편취액 산정과 피해 회복 정도의 평가	반환금 300 만 원과 기성 부분의 취급

쉬운 설명 — 제 2 부 정리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죄가 되려면 '속였다 → 상대가 잘못 믿었다 → 그 믿음 때문에 돈을 건넸다 → 실제로 돈을 받았다 →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다섯 개의 고리가 하나도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돈이 오간 사실은 은행 기록에 남아 있어 다룰 수 없지만, 마지막 고리인 '편취의 범의(騙取의 犯意)' 즉 계약할 때 이미 속일 마음이었는지는 사람의 속마음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고 주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2 월에 철거 공사를 15%나 진행한 사실과 11 월에 300 만 원을 돌려준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정말 처음부터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면 굳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거래관계에서 편취의 마음이 있었는지는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었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왔습니다(대법원 2014 도 3775 판결: 물품거래에서 대금 마련 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를 다룬 사건입니다).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은, 재판 중에 사기죄의 형이 무거워지는 법 개정이 시행되었지만 이 사건에는 행위 당시의 법인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미리 아셔야 할 것은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형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어지는 제 3 부에서 설명드립니다.

04 제 3 부 · 양형 부분 (예상 양형이유)

「형은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 이 장은 형이 정해지는 구조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선고형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3-1. 형이 정해지는 구조

형은 네 단계를 거쳐 좁혀집니다. 첫째 법정형은 법률이 그 죄에 대해 정해 둔 형의 폭이고, 둘째 처단형은 경합범 가중이나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을 반영하여 실제로 선고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힌 것이며, 셋째 권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사건 유형과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하는 구간이고, 넷째 선고형은 판사가 그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형입니다. 처단형은 법률이 정한 산술의 결과이므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선고형은 법관의 판단 영역이므로 본 보고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고려 요소만 서술합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이 사건은 정식 공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존중되는 공판절차가 전제됩니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식재판청구나 형종상향 금지의 논점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3-2. 예상 양형이유 분석

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표 11. 처단형 산출 과정 —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 단계	근거 조문	계산 결과
상상적 경합 정리	형법 제 40 조	해당 없음 — 1 개의 죄
형종 선택 (징역형)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행위시 조문)	10 년 이하의 징역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해당 없음 — 경합범 아님
유기징역의 하한·상한	형법 제 42 조 (유기징역은 1 개월 이상 30 년 이하)	하한 1 개월, 상한은 법정형 상한인 10 년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해당 없음 — 전과 관련 기재 없음
법률상 감경	형법 각 해당 조문	해당 없음 — 공소장에 감경사유 기재 없음
처단형 (결론)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제 42 조	징역 1 개월 이상 10 년 이하

표 12. 처단형 산출 과정 —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적용 단계	근거 조문	계산 결과
형종 선택 (벌금형)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행위시 조문)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액의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8 조 제 1 항 제 2 호	해당 없음 — 경합범 아님
벌금의 하한	형법 제 45 조 (벌금은 5 만원 이상)	하한 5 만원
검사의견액	약식명령 청구 사건에서만 기재됨	해당 없음 — 정식 공판청구 사건이므로 의견액 없음
처단형 (결론)	형법 제 347 조 제 1 항, 제 45 조	벌금 5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위 두 표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진 산술의 결과일 뿐 그대로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특히 하한이 징역 1 개월, 벌금 5 만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법률이 정한 형종의 최소 단위를 적은 것이지 그 정도의 형이 예상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선고는 다음 항의 권고형 범위와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②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표 13. 적용 양형기준의 확정

적용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시행 버전	2025. 3. 24. 수정, 2025. 7. 1. 시행 버전
공소제기일 대조	공소제기일 2026. 1. 15. — 2025. 7. 1. 이후이고, 다음 개정(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전이므로 위 버전 적용
개정 전후 형량표 대조	제 1 유형(1 억 원 미만)의 형량범위는 2025 년 버전과 2026 년 개정 버전이 동일 — 감경 1 년 이하 / 기본 6 월~1 년 6 월 / 가중 1 년~2 년 6 월
다른 죄명의 기준 설정 여부	이 사건 죄명은 사기 1 개뿐이므로 다른 범죄군 양형기준의 개별 확인 대상 없음

가. 제 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의 요건인 다수인의 역할 분담이나 체계적 조직 구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득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 만 원으로 1 억 원 미만이므로 「제 1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양형기준상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표 14. 특별양형인자 전수 점검 (일반사기)

인자	구분	이 사건 관련 사정	출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	장래의 완성 약속 부분은 확정적 기망과 성질이 다르다는 주장이 가능하나, 인정 여부는 본안 판단에 달림 — 기록 확인 필요	분석의견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감경	피해액의 3 분의 1 이하만 실질적 피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 300 만 원 반환과 공정률 15%의 기성 가치를 합산하여 평가 — 기록 확인 필요	분석의견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감경	단독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없음	공소장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	공소장에 관련 기재 없음 — 기록 확인 필요	공소장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공소장에 기재 없음	공소장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감경	공소장에 기재 없음	공소장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감경	공소장에 기재 없음 — 수사 개시 경위는 기록 확인 필요	공소장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감경	현재까지 300 만 원 반환에 그침. 잔여 피해액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가 이 사건 최대의 감경 변수	공소장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	피해자 1 명·단일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없음	공소장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	피해자의 재산 상태나 주거 사용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기재 없음 — 기록 확인 필요	공소장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허위 서류 작성이나 소송사기에 관한 기재 없음	공소장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가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은닉 관련 기재 없음	공소장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가중	공범 기재 없어 해당 없음	공소장
상습범인 경우	가중	공소장에 기재 없음	공소장
동종 누범	가중	전과에 관한 기재 없음 — 기록 확인 필요	공소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가중요소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요소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영역은 인자의 존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경우의 수를 함께 제시합니다. 이 사건이 속하는 일반사기 제 1 유형의 권고형 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1 년 이하, 기본영역 징역 6 월 이상 1 년 6 월 이하, 가중영역 징역 1 년 이상 2 년 6 월 이하입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표 15. 인자 존부에 따른 권고영역의 경우의 수

경우	전제되는 인자 상태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경우 1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 감경인자가 인정되고 가중인자는 없는 경우	감경영역	징역 1 년 이하
경우 2	감경인자와 가중인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거나 서로 상쇄되는 경우	기본영역	징역 6 월 이상 1 년 6 월 이하
경우 3	심각한 피해 야기나 동종 누범 등 가중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영역	징역 1 년 이상 2 년 6 월 이하

나. 제 2 범죄 이하

이 사건은 죄명이 사기 1 개뿐이므로 제 2 범죄 이하의 유형 결정과 특별양형인자 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범위반이나 횡령·배임 등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죄명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각 죄명별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개별 확인할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장】 【분석의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2 개 이상의 범죄가 있을 때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다른 범죄의 상한 일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일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동종경합 합산으로 유형이 상승할 때 적용되는 형량범위 하한 감경 규칙 (1 단계 상승 시 하한의 3 분의 1 감경, 2 단계 이상 상승 시 하한의 2 분의 1 감경, 가장 무거운 단일범죄 유형의 하한을 한도로 함) 역시 이 사건에서는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2 년 6 월은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0 년 이내에 있으므로, 처단형에 따른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고형이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처단형이 우선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는 징역형을 전제로 제시된 것이므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권고형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의 구체적 취급은 담당 변호인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③ 선고형의 결정 — 고려 요소의 서술

형법 제 51 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표 16. 형법 제 51 조 각 호의 이 사건 대입

고려 요소	이 사건에서 검토될 사정	방향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45 세로 인테리어 시공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 부양가족과 생계 상황, 전과 유무는 공소장에 기재 없음	기록 확인 후 정리 필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거래상대방으로서 계약 관계. 친족이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에 관한 기재는 없음	중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기존 현장의 자재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위. 수단은 구두 고지이며 위조 문서 등은 사용되지 않음. 결과는 5,000 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	동기의 소명이 중요
범행 후의 정황	2025. 11. 300 만 원 반환, 2025. 12. 철거 공사 약 15% 진행, 수사기관에서 편취 의사를 부인하는 변소	일부 유리·일부 검토 필요

위 요소들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도록 법률이 정한 사항이며, 실제 판결문의 「선고형의 결정」 부분도 이 틀에 따라 서술됩니다. 다만 본 보고서는 분석·설명 자료이므로 여기에서 구체적 형량이나 그 확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형법 제 62 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 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요건 설명이며 이 사건에 대한 전망이 아닙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3-3. 감경 방향 준비 사항과 준비자료

표 17. 준비자료 목록 — 표 14 의 미확정 감경인자와 연결

자료	내용	필요 이유	긴급도
잔여 피해액 회복 계획	4,700 만 원에 관한 변제 재원과 일정을 정리한 계획서, 실제 송금 내역	표 14 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인자와 직결되며 권고영역을 좌우함	매우 높음
기성고 산정 자료	철거 공사 공정률 15%에 관한 사진·작업일지·투입 인건비 및 자재비 내역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인자 판단과 실질 피해액 평가의 근거	높음
자재 발주 증빙	이 사건 현장을 위한 견적 요청·발주서·계약 문의 기록, 자재상과의 대화 내용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다는 반증으로서 본안과 양형에 모두 작용	높음

자료	내용	필요 이유	긴급도
자금 사용처 정리표	수령한 5,000 만 원의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와 증빙	사업 계속을 위한 지출과 개인적 소비를 구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근거	높음
당시 재정 상황 설명자료	2025 년 자재 가격 변동 자료, 기존 현장 중단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범행의 동기」 소명과 채무불이행 주장을 뒷받침	중간
계약 관련 원본 문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공정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기록 전체	「직영 창고 보유」 문언의 존부를 확인하는 1 차 자료	매우 높음
가족·거래처 탄원서	생계 상황과 평소 업무 태도를 구체적 사실로 기재한 서면	형법 제 51 조의 성행·환경 항목에 관한 자료	중간
전과 조회 결과 확인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의 존부	표 14 의 「동종 누범」 가중인자 존부를 확정하기 위함	높음
반성문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한 진술한 서면	일반양형인자인 「진지한 반성」 과 관련	중간

준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억할 원칙은 하나입니다. 다투는 자료와 뉘우치는 자료는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보이는 자료(자재 발주·현장 착수·자금 사용처)는 본안에서 다투는 근거이면서 동시에 「범행수법이 불량하지 않다」 는 방향의 양형 자료가 되므로 두 노선 모두에 유용합니다. 반면 반성문의 표현이 사실관계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면 본안에서의 주장과 모순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

3-4. 절차 로드맵과 자주 묻는 질문

표 18. 공소제기 이후의 절차 (기간은 통상적인 예시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	통상적 시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피고인·가족이 할 수 있는 일
공소장 부분 송달	공소제기 후 수 주 이내	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보내 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변호인 선임, 송달 주소 관리,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준비
의견서 제출	부분 송달 후 정해진 기간 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다툼 범위 결정, 관련 자료 1 차 정리
공판준비 절차	사건에 따라 생략되기도 함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절차	증거 인부 방향 확정, 증인 신청 검토
제 1 회 공판기일	공소제기 후 통상 1~2 개월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증거 인부	출석 준비, 피해 회복 진행 상황 보고
증거조사·	제 1 회 이후 수 회	서증 조사와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자료 정리, 유리한

단계	통상적 시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피고인·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증인신문	기일	신문	자료 추가 제출
피고인신문· 변론종결	증거조사 종료 후	피고인에 대한 신문,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최후진술	최후진술 준비, 탄원서·합의 자료 최종 제출
선고	변론종결 후 통상 2~4 주	판결 선고	선고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를 7 일 이내에 결정

Q1.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재판 중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공소장에 불구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불구속 상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새로 생기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 회복 협의도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여서, 인정될 경우 권고영역 자체가 감경영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즉 사건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하는 폭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법령·판례】**

Q3. 탄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탄원서는 형법 제 51 조가 정한 「범인의 성행과 환경」에 관한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량이나 숫자보다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선처를 구하는 문장보다는 평소의 업무 태도, 부양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달라진 점을 사실 중심으로 적은 서면이 더 의미 있게 읽힙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Q4. 300 만 원을 돌려줬고 공사도 일부 했는데 편취액이 5,000 만 원에서 줄어드나요?

편취액은 원칙적으로 기망에 의하여 교부받은 재물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후의 일부 반환이나 일부 이행이 편취액 자체를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득액 5,000 만 원이 1 억 원 미만이어서 어느 쪽이든 양형기준상 제 1 유형에 해당하므로 유형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반환과 기성 부분은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를 통해 형에 반영되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Q5. 재판 중에 사기죄의 형이 무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새 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1 조 제 1 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행위는 2025 년 10 월에 있었고 개정으로 형이 무거워졌으므로, 행위 당시의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령·판례】**

Q6. 첫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고, 매번 출석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공소제기 후 1 개월에서 2 개월 사이에 첫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식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변호인과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

단계	통상적 시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피고인·가족이 할 수 있는 일
----	--------	-------------	------------------

【분석의견】

Q7.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일, 둘째 계약서와 대화기록 원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 두는 일, 셋째 잔여 피해액을 어떻게 회복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대화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가장 먼저 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의견】

쉬운 설명 — 제 3 부 정리

쉽게 말씀드리면, 형은 네 개의 그릇을 차례로 거치며 좁혀집니다. 법이 정해 둔 넓은 폭인 '법정형(法定刑)', 가중과 감경을 반영해 좁힌 '처단형(處斷刑)',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하는 구간인 '권고형(勸告刑)', 그리고 판사가 마지막에 정하는 '선고형(宣告刑)'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단형이 징역 1 개월부터 10 년까지로 넓게 나오는 것은 법이 정한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이지, 그 정도가 예상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숫자는 세 번째 그릇인데, 피해 금액이 5,000 만 원이어서 '일반사기 제 1 유형'에 들어가고 그 권고 구간은 감경영역이면 징역 1 년 이하, 기본영역이면 6 개월에서 1 년 6 개월, 가중영역이면 1 년에서 2 년 6 개월입니다. 여기서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를 가르는 가장 큰 열쇠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감경인자인데,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입니다. 남은 4,700 만 원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의 제 2 부에서 정리한 '다룰 수 있는 것'과 이 장의 준비 사항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돈해야 하므로, 반성문이나 합의서의 문구는 반드시 변호인의 검토를 거친 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징역 몇 년이 나온다'는 식의 예측을 하지 않으며, 지금 차분히 자료를 갖추는 일이 결과에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5 별첨

본문에서 인용한 법조문·판례·용어와 그 검증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다.

별첨 1. 적용법조 전문

형법 제 347 조 (사기) — 행위시 조문 [행위일 2025. 10. 6. 당시 시행]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47 조 (사기) — 현행 조문 [시행 2026. 3. 12.] · 이 사건 부적용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 제 42 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개월 이상 30 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 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 45 조 (벌금)

벌금은 5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 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 제 62 조 제 1 항 (집행유예의 요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 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 년 이상 5 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 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 254 조 제 3 항·제 4 항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49 조 제 1 항 제 3 호 (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년

별첨 2. 관련 판례 요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 도 3775 판결 [사기]**

판시사항 — 거래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참조조문 형법 제 347 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 도 5382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 도 748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 도 10416 판결.

위 참조판례 3 건은 2014 도 3775 판결의 참조판례란에 기재된 것으로 사건번호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각 판결의 개별 요지는 본 보고서에서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담당 변호인이 원문을 확인한 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에 관한 일반 법리는 다수의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 사건번호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별첨 4의 검증 내역에 변수로만 기재하고 본문에서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령·판례】 【분석의견】

별첨 3. 법률용어 사전 (가나다순)**표 19. 본문에 등장한 법률용어**

용어	뜻풀이
공소기각 (公訴棄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
공소사실의 특정 (特定)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밝혀 무엇을 문제 삼는지 분명히 하는 것.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
공소시효 (公訴時效)	범죄가 있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公訴狀一本主義)	법원이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그 밖의 서류나 자료를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권고형 (勸告刑)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사건 유형과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하는 형의 구간
기망 (欺罔)	거짓말을 하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숨겨 상대방을 사실과 다르게 믿도록 만드는 행위
면소 (免訴)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사기죄는

용어	뜻풀이
죄)	이에 해당하지 않음
법정형 (法定刑)	법률이 각 범죄에 대하여 미리 정해 둔 형의 종류와 범위
불법영득의사 (不法領得意思)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상상적 경합 (想像的 競合)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함
선고형 (宣告刑)	판사가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
실체적 경합 (實體的 競合)	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별개의 죄를 이루어 함께 재판받는 경우
양형기준 (量刑基準)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정한 형량 권고 기준. 법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존중됨
인부 (認否)	검사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한다·아니다(부인)·모른다(부지)를 밝히는 절차
일반양형인자	권고영역을 결정하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집행유예 (執行猶豫)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처단형 (處斷刑)	법정형에 가중·감경을 반영하여 실제로 선고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힌 형
처벌불원 (處罰不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감경·기본·가중)을 결정하는 데 직접 작용하는 중요한 양형 사정
편취의 범의 (騙取的 犯意)	속여서 재물을 받아 내겠다는 마음.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포괄일죄 (包括一罪)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져 전체를 하나의 죄로 평가하는 경우
행위시법주의 (行爲時法主義)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할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

별첨 4. 검증 내역

표 20. 인용 검증 — ✓ 확인 / ① 변수

인용 대상	확인 방법	확인일	등급
형법 제 347 조 (행위시 조문)	국가법령정보 행위시법 조회 — 2025. 10. 6. 시행 버전 조문 전문	2026. 8. 10.	✓ 확인
형법 제 347 조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 현행 조문 전문 — 시행 2026. 3. 12.	2026. 8. 10.	✓ 확인

인용 대상	확인 방법	확인일	등급
형법 제 1 조·제 42 조·제 45 조·제 51 조·제 62 조	국가법령정보 조문 전문	2026. 8. 10.	✓ 확인
형사소송법 제 249 조·제 254 조	국가법령정보 조문 전문	2026. 8. 10.	✓ 확인
사기범죄 양형기준 (2025. 7. 1. 시행 버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표 기준표 원문 — 일반사기 유형별 형량범위 및 특별양형인자 전수 대조	2026. 8. 10.	✓ 확인
개정 전후 형량표 대조 (2026. 7. 1. 시행 버전)	양형위원회 현행 기준표와 제 1 유형 형량범위 비교 — 동일함을 확인	2026. 8. 10.	✓ 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 도 3775 판결	판례 원문 판시사항·참조조문·참조판례 대조	2026. 8. 10.	✓ 확인
대법원 2003 도 5382 · 2005 도 7481 · 2007 도 10416	2014 도 3775 판결의 참조판례란에서 사건번호 확인 (개별 요지 미대조)	2026. 8. 10.	① 변수
형사소송법 제 326 조·제 327 조·제 328 조	조문 번호 및 표제 수준에서 인용 — 각 호 전문은 미대조	2026. 8. 10.	① 변수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규정	원칙의 명칭만 사용하고 근거 규정의 조문 번호는 인용하지 않음	미대조	① 변수
민사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별 법리	일반 법리로만 서술. 개별 사건번호 미확인으로 본문 인용하지 않음	미대조	① 변수
편취액 산정 법리 (교부받은 재물 전부 기준)	일반 법리로 서술. 개별 사건번호 미확인	미대조	① 변수
피고인의 전과·재정 상황·수사 개시 경위	공소장에 기재 없음 — 기록 열람 후 확인할 과제	미확인	① 변수
증거목록 및 수사보고	공소장에 「기재 생략」으로 표시되어 미제공	미확인	① 변수

고 지

본 보고서는 분석·설명 자료로서 변호(변론)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검사의 주장일 뿐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인용한 법령·판례·양형기준은 확인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시행 버전과 개정 여부는 사용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보고서에 기재된 처단형과 권고형은 법률과 기준이 정한 범위를 산출한 것일 뿐 선고될 형을 예측한 것이 아니며, 대응 방향의 선택과 서면의 문구는 반드시 담당 변호인과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의뢰인·변호인 간 내부 검토 자료이므로 외부 유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